

[별표 3]

업무정지·위촉해지 등 제재조치의 세부기준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제재조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조치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, 위촉해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, 경고인 경우에는 주의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조문	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
<p>1.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</p> <p>1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악화 시킨 경우</p> <p>2)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</p> <p>3)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</p> <p>4)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</p> <p>5)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</p> <p>6) 검증조사 결과 부당·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</p> <p>7) 기타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</p>	제6조제2항 제1호	<p>위촉해지</p> <p>위촉해지</p> <p>위촉해지</p> <p>위촉해지</p> <p>위촉해지</p> <p>경고</p> <p>주의</p>	<p>업무정지 3개월</p> <p>경고</p>	<p>위촉해지</p> <p>업무정지 3개월</p>
<p>2.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</p>	제6조제2항 제2호	업무정지 6개월	위촉해지	
<p>3.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</p>	제6조제2항 제3호	위촉해지		